L.BIZ PARTNERS · PRACTICAL KIT · 2026

대표 급여·배당
5분 점검 키트

내 회사 숫자를 **다섯 칸 + 결산서 두 줄**에 적어 보는 자료
— **5분은 첫 장**입니다. 나머지는 그 칸을 왜 그렇게 적는지의 근거이니 필요할 때 보세요

이 키트에 들어 있는 것

① **내 숫자 다섯 칸 + 결산서 두 줄**
여기서 못 채우는 칸이 바로 상담에서 물어볼 것입니다

② **급여 쪽에서 깨지는 네 곳**
올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

③ **배당 2,000만원 칸 점검**
가장 널리 퍼진 오해 하나를 바로잡습니다

④ **건강보험료는 뒤늦게 온다**
배당한 해가 아니라 다음 해 11월부터 반영이 시작됩니다

⑤ **못 채운 칸이 그대로 질문이 됩니다**
이 종이를 들고 오시면 상담의 절반은 끝나 있습니다

⚠ 개별 사안의 세무 판단과 신고는 세무사의 업무입니다. 이 키트는 **상담에 가져갈 숫자와 질문을 정리하는 용도**이고, 세액을 계산해 드리는 자료가 아닙니다.

010-3709-5785 · 카카오톡 채널 「엘비즈파트너스」

SHEET 1

① 내 숫자 다섯 칸 — 먼저 적어 보세요

결산서와 급여대장을 옆에 두시면 됩니다. **못 채우는 칸이 생기는 것이 정상**이고, 그 칸이 상담 주제가 됩니다.

1. 작년 세전이익은 얼마입니까

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

2. 대표 연간 총급여는 얼마입니까

비과세를 뺀 금액.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옵니다

3. 작년에 배당을 했습니까 — 주주별로 얼마씩

안 했다면 "0"이라고 적으세요. 그것도 답입니다

4. 주주가 몇 명이고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

가족 주주가 있다면 지분이 **정식으로 이전된 것인지**도 함께 적으세요

5. 대표 퇴직 시점을 대략이라도 정해 두셨습니까

급여·배당 비율은 그해 세금만이 아니라 **먼 훗날의 퇴직금 한도까지** 함께 결정합니다

✍ 결산서에서 두 줄만 더 찾아 적으세요

미처분이익잉여금 _____ / **가지급금(대표이사 대여금)** _____

잉여금이 배당의 재원이고, **가지급금이 있으면 급여를 올릴지 배당을 할지가 정반대로 갈립니다.** 못 찾으셔도 됩니다 — 그 자체가 상담 첫 질문이 됩니다

둘을 나란히 놓고 보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. 급여는 회사 비용이 되어 법인세를 줄이지만 4대보험이 붙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.
배당은 **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**에서 나가 회사 비용이 아닙니다.
그래서 "배당 15.4%가 싸다"는 말은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— 회사가 낸 **법인세까지 얹어야** 비교가 됩니다.

SHEET 2

② 급여 쪽에서 설계가 깨지는 네 곳

급여는 회사 비용이 되지만, 아래 넷에 걸리면 **개인은 세금을 내고 회사는 비용으로 못 쓰는** 최악이 됩니다.

- [ ] **1. 상여금이 정해진 기준을 넘었다**
  정관·주주총회·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**초과한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**. 기준 자체가 없으면 그 논의를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

- [ ] **2. 같은 직위의 비지배주주 임원·직원보다 많이 받는다**
  지배주주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**비지배주주**보다 많이 준 보수는 비용 부인 대상입니다. **비교 대상이 될 사람이 회사에 있는지부터** 확인해야 합니다

- [ ] **3. 급여를 낮춰 뒀다가 퇴직이 다가온다**
 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**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 × 1/10 × 근속연수 × 2배**입니다(2020년 이후 근무기간분 — 그 전 기간은 배수가 다릅니다). 3년 동안 급여를 낮추면 한도도 함께 줄고, **넘은 금액은 근로소득이 됩니다**. **반대로 퇴직 직전에 급격히 올리는 것도 별도 검토 대상**입니다

- [ ] **4. 급여를 받는데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다**
  근로의 실질이 없으면 급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 가족을 임원·직원으로 올려 둔 경우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

⚠️ **급여를 올리면 개인 쪽에서도 하나가 걸립니다.**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가 늘수록 줄어 **1억원 초과분은 2%만** 공제됩니다 — 총급여 1억을 넘기면 올린 급여의 **98%가 그대로 과세표준**에 들어갑니다.

✍️ **위 네 곳 중 우리 회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몇 번입니까**

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**임원 보수·상여의 지급기준**이 있는지부터 보세요. 없다면 1번을 따질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— **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첫 상담 주제**가 됩니다

근거 — 법인세법 시행령 §43②·③ · 소득세법 §22③ ·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§47① ·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§44④·⑤

메모 — 우리 회사에서 걸릴 것 같은 항목

SHEET 3

③ 배당 2,000만원 칸 — 널리 퍼진 설명 하나가 틀렸습니다

❌ **흔한 오해** — "배당이 2,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합산돼 세금이 확 뛴다."
✅ **실제** — 넘어도 **2,000만원까지는 그대로 14%**이고 **초과분만** 다른 소득과 합칩니다. **절벽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.**

확인할 것	기준
기준 금액	**주주 1인당 연 2,000만원** — 회사가 아니라 사람 기준이고, 배당만이 아니라 **이자소득까지 합친** 금액입니다
그 안의 세율	원천징수 14% + 지방소득세 1.4% = **15.4%**
넘었을 때	초과분만 합산 — 다만 세액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**큰 쪽**으로 정합니다

⚠️ **배당은 지분대로 나갑니다.** 대표님이 1을 받으시려면 나머지 주주에게도 지분만큼 함께 나갑니다. **최대주주가 포기해 그 특수관계인이 더 받는 형태면 증여로 봅니다** — 가지급금을 배당으로 정리하려다 배우자 지분만큼이 함께 나가 **피부양자 탈락과 종합과세가 동시에**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.

✍️ **주주별로 "작년 이자+배당 합계 ÷ 2,000만원"을 적어 보세요**

이 칸은 채우라고 있는 칸이 아니라, 이미 얼마나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칸입니다. 비어 있다고 곧바로 채우면 위 증여 문제와 **다음 장의 피부양자 항목**에 걸립니다

✍️ **우리 정관에 중간배당 근거가 있습니까**

☐ 있다 ☐ 없다 ☐ 모르겠다 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이사회 결의로 **연 1회에 한해** 할 수 있습니다. **모르겠다에 표시하셨다면 그것이 상담 주제입니다**

근거 — 소득세법 §14③6호·§14②·§62 ·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§129①2호나목과 지방세법 §103의13① · 증여의제는 상증세법 §41의2① · 중간배당은 상법 §462의3①

SHEET 4

④ 건강보험료는 배당한 해가 아니라 뒤늦게 옵니다

이걸 모르면 "작년에 배당했는데 보험료 안 올랐네"라고 안심했다가 뒤늦게 반영됩니다. **첫 타격은 배당 다음 해 11월**이고, 그 다음 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됩니다.

확인할 것	기준
보험료가 더 붙는 기준	보수(급여) 외 소득이 **연 2,000만원 초과**
얼마에 붙는가 — **직장가입자**	**2,000만원 초과분에만** 붙습니다 (대표님 본인이 대개 여기)
얼마에 붙는가 — **지역가입자**	**공제 없이 전액에** 붙습니다 — 배우자·가족 주주가 **피부양자에서 빠지면** 여기 해당합니다
무엇을 합산하는가	배당만이 아니라 **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를 합산**
언제 반영되는가	1~10월분은 **전전년도** 자료, 11~12월분은 전년도 자료
누가 내는가	급여에 붙는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이지만, **보수 외 소득에 붙는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**

⚠️ **가족 주주가 피부양자라면 배당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.** 빠지면 초과분이 아니라 **소득과 재산 전체**에 보험료가 붙습니다. 기준선이 하나가 아닙니다 — 소득은 **여섯 가지를 합산**하고, **재산이 많으면 소득 기준선이 내려가며**, 형제·자매는 나이(30세 미만·65세 이상)·장애·국가유공자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대상입니다. **이 키트로는 탈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.**

✍️ **재작년과 작년의 보수 외 소득이 각각 2,000만원을 넘었습니까**

배당·이자·임대소득 등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. **이 키트로 금액을 계산하지 마세요** — 실제 부과액은 개인별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

근거 — 국민건강보험법 §71①·②·§76①·② · 같은 법 시행령 §41 · 피부양자 요건은 시행규칙 §2①과 별표 1의2 · 2026년 요율은 건강보험 7.19%,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약 13.14%이며 매년 바뀝니다

SHEET 5

⑤ 못 채운 칸이 바로 물어볼 것입니다

✍ 그 전에 —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무엇입니까

☐ 자금 인출 ☐ 세부담 조정 ☐ 퇴직 준비 ☐ 가지급금 정리 ☐ 가족 승계

같은 숫자라도 목적이 다르면 답이 정반대가 됩니다

1. 우리 회사 세전이익 수준에서 급여와 배당을 어떤 비율로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까?
2. 주주별 **이자+배당 합계**가 2,000만원 칸을 얼마나 쓰고 있고, **그 칸을 채워도 되는 상황입니까?**
3. 지분대로 나누지 않는 배당을 검토 중이라면 **증여 문제**가 없습니까?
4. 배당을 하려면 지금 우리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?
5. 가족 주주 지분이 세무상 문제없이 이전된 것입니까? **이름만 빌린 주식은 없습니까?**
6. 재작년 보수 외 소득으로 올해 건강보험료가 오른 부분이 있습니까?
7. 가족 주주 중 건강보험 **피부양자**가 있다면 배당 후에도 자격이 유지됩니까?
8. 지금 급여 수준을 유지하면 퇴직 시점의 퇴직금 한도는 얼마가 됩니까?
9. 우리 정관에 임원 **보수·상여·퇴직금**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?
10. **가지급금**이 있는데, 급여를 올려 정리하는 것과 배당으로 정리하는 것 중 어느 쪽입니까?
11. 우리 **미처분이익잉여금** 수준이면 지금 배당 말고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까?
12. 우리 정관에 **중간배당** 근거가 있습니까? 없으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?

NEXT STEP

이 종이를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

채운 칸은 확인만 하고 비운 칸부터 함께 채웁니다. 결산서와 이 키트를 놓고 **30분**이면 방향이 잡힙니다.

전화 010-3709-5785 · 카카오톡 채널 「엘비즈파트너스」 · lbiz-partners.com

※ 본 자료는 2026년 8월 28일 기준 현행 법령을 근거로 한 일반 정보이며,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·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의사결정은 반드시 세무사·법무사·변호사 등 유자격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세요. © 엘비즈파트너스